



천안 문성 · 원성 주택재개발사업  
관리처분 설명회

## ■ 감정평가 적용법규

- ❖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❖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- ❖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- ❖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- ❖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❖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❖ 국민주택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

## 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

### 토지의 감정평가

❖ 당해사업 구역밖의 인근 지역내에 소재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사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고 당해 토지의 위치, 형상, 주위환경 이용상황 및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.

## 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

### 건물의 감정평가

❖ 건물의 평가는 구조, 용재, 시공상태, 관리상태, 마감상태, 부대설비  
개보수 정도, 장래 이용 가능 년수 등 제반 현상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  
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.

## 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

### 구분건물의 감정평가

❖ 구분건물로서 제반 입지조건, 주위환경,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용재, 부대설비, 시공정도, 현상 및 인근지역내 등류형, 유사형 구분 건물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의 소유권,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하여 일괄하여 평가.

## ■ 추정 비례율 현황(가정)

추정비례율

$$= \frac{\text{사업완료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} - \text{총 사업비}}{\text{분양대상자 전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}} \times 100$$

Ex.1 가정)

총공사비 : 800억

전체 종전토지 총가액 : 520억

사업완료 후 총 추산액 : 1,440억

$$\frac{1,440\text{억} - 800\text{억}}{520\text{억}} \times 100 = 123.3\%$$

(20%감액)

Ex.2 가정)

총공사비 : 800억

전체 종전토지 총가액 : 650억

사업완료 후 총 추산액 : 1,440억

$$\frac{1,440\text{억} - 800\text{억}}{650\text{억}} \times 100 = 98.46\%$$

Ex.3 가정)

총공사비 : 800억

전체 종전토지 총가액 : 780억

사업완료 후 총 추산액 : 1,440억

$$\frac{1,440\text{억} - 800\text{억}}{780\text{억}} \times 100 = 82.05\%$$

(20%증액)

※ 종전토지 총가액이 ↑ 할수록 추정비례율은 ↓ 한다

## ■ 비례율 변화에 따른 권리가액 변화

Ex.1 가정)  
감정평가액 : 1억일 경우

권리가액 = 비례율 X 감정평가액

비례율이 123.3%일 경우 =  $123.3\% \times 80,000,000 = 98,460,000$  원  
(20%감액)

비례율이 98.46%일 경우 =  $98.46\% \times 100,000,000 = 98,460,000$  원

비례율이 82.05%일 경우 =  $82.05\% \times 120,000,000 = 98,460,000$  원  
(20%증액)

## ■ 사업지연시 주민 부담율 검토

- 물가상승률 연5% 인상 시 + 금융비용 7%
  - (기타요인은 고려하지 않음)



## ■ 추정 비례율 현황(가정)

- 비례율은 종전자산 평가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의 하나이며,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비례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. 즉, 동일한 구역 내에서 종전 총가격을 높게 평가한다면 비례율은 떨어지며 종전총가격을 낮게 평가한다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됨.
- 사업계획에 있어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종전자산의 평가를 적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높게 한다고 해서 전체조합원에게 유리한 점이 없음.

## ■ 조합원 질문사항(I)

### 1필지의 수인의 공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 수?



1.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.
2.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.
3.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.
4.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.
5.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.(다만,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)

## ■ 조합원 질문사항(2)

### 현금 청산자들의 보상시기?

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. (청산 금액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.)

1.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
2.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
3.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
4.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자

## ■ 조합원 질문사항(3)

### 이주시기는 언제쯤이고 이주비는 얼마 주는지?

■ 조합원의 이주는 사업이 진행하는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다만,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이주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전 조합과 시공사가 본 계약을 체결 한 후에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이주비가 지급이 됩니다.

일반적으로 철거직전까지 이주를 진행하면 됨.

■ 이주비는 시공사 선정시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성 및 시공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음.

## ■ 조합원 질문사항(4)

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왜 먼저 하는지?

조합설립인가

사업시행인가

관리처분인가

이주 및 철거

분양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**46조 1항**에 기재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**21일** 이내에 통지하고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**30일 이상 60일**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.

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**48조 1항**에 의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

## ■ 조합원 질문사항(5)

### 재개발사업을 반대하여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?

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/3이상과 소유면적의 2/3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, 이 요건만 충족하면 일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재개발사업은 시행되며, 대상자는 현금청산으로 청산이 됩니다.

※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, 분양신청을 철회한자,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,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자

감사합니다

